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신영대·조 국·진선미

이성윤 · 황명선 · 이훈기

안규백 · 김윤덕 · 문금주

이광희 • 전재수 • 부승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,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.

그러나 보호자가 사망, 입원, 행방불명,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 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.

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(안제3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발견한"을 "발견 또는 인지한"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유자가 사망, 입원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동물의 구조・보호) ① 시	제3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
・도지사와 시장・군수・구청	
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동물을 <u>발견한</u> 때	<u>발견 또는 인지</u>
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	<u>ট</u>
조에 따라 치료・보호에 필요	
한 조치(이하 "보호조치"라 한	
다)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	
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	
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	
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 다	
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	
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	
동물은 구조・보호조치의 대상	
에서 제외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소유자가 사망, 입원, 행방불
	명,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